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 연월일	2023. 11. 17.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11. 17.

제 출 자: 고성군수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조직의 기능적 재편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사업소의 신설, 폐지, 분리, 명칭변경

- 1) 신 설: 관광진흥과
- 2) 폐 지: 관광지사업소
- 3) 분 리: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과 + 관광진흥과
- 4) 명칭변경: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과

나. 본청 문화환경국내 부서 신설 및 소관사무 (안 제5조의2)

다. 사업소 소관사무 (안 제15조)

라.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변경(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복지지원과-41689(2023. 10. 31.)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1552호
 - 가) 예고기간: 2023. 10. 12. ~ 11. 01.(20일간)
 - 나) 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문화재,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조성, 해양치유”를 “문화유산관리, 문화유산정책, 박물관 운영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광정책, 생태관광,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조성, 해양관광, 당항포관광지 등에 관한 관리·운영 사항”

제1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

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을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한다.

②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③ 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④ 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를 “관광진흥과장”로 한다.

⑤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⑥ 고성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광지사업소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2(문화환경국) ① 문화환경국에 <u>문화관광과</u>, <u>스포츠산업과</u>, <u>환경과</u>, <u>해양수산과</u>, <u>녹지공원과</u>를 둔다.</p> <p>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p> <p>1. <u>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산업, 문화재,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 조성, 해양치유에 관한 사항</u> <u><신 설></u></p> <p>2. ~ 5. (생략)</p> <p>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u>관광지사업소</u> 가. <u>관광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 나. <u>엑스포주제관 및 엑스포 관련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u> 다. <u>그 밖에 엑스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u></p> <p>2. · 3. (생략)</p>	<p>제5조의2(문화환경국) ① ----- ----- <u>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u> ----- -----.</p> <p>② ----- -----.</p> <p>1. -----, <u>문화유산관리, 문화유산정책, 박물관 운영 등</u>-----</p> <p>2. <u>관광정책, 생태관광,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조성, 해양관광, 당항포관광지 등에 관한 관리·운영 사항</u></p> <p>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제15조(소관사무) ----- -----.</p> <p><u><삭 제></u></p> <p>1. · 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p>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별표 2] (현행)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치
관광지사업소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별표 2] (개정안)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직을 기능적 재배치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행정과장 최 낙 창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 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

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

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